

## Part 4.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공(公共)성이 대폭 강화되어 시민을 배려하는 건축물로 탈바꿈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창의적 디자인으로 고품격화  
사용자 중심, 친환경의 공공건축물 디자인 10원칙 제시  
서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 공공건축물

건축은 도시의 기본요소이며, 도시의 얼굴이다.

건축은 항상 그 의미를 형태로 만들고, 그 건축이 반복되고 쌓여서 마을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생겨난다.

거대도시 서울을 이루고 있는 건축물, 그 중에서도 공공건축물이 지녀야 할 특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공성에 있다.

그러나 서울은 공간규모나 인구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지 오래지만,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공공성에 대한 배려보다는 기능적 공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공공건축물은 더 이상 기능적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공간, 찾기 쉽고 약속장소로 활용하는 공간, 이웃과의 커뮤니티가 가능한 공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제 공공건축물은 공공성의 옷을 입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

###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하는 담장은 허물고, 과도하게 설치된 옹벽은 허용하지 않는다.

- 학교 등 공공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은 방음 등을 고려, 조경 등으로 대체된다. 또 무차별적으로 구릉지에 옹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은 물론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도 제한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보행경관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접근도 상당히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으며 보안 등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디자인심의를 통해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건축물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canopy)가 사라진다.

- 시민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했던 이유 없이 과도하게 높은 계단, 권위의 상징인 양 설치된 거대한 캐노피 설치가 제한된다. 특히 교통약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높은 계단은 휠체어 이용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램프 등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접근이 쉬워짐은 물론 다소 권위적으로 보였던 공공건축물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전면부 외부주차장은 시민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 보행로에서 공공건축물의 출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보이는 것이 외부주차장이다.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되지 않고 설치된 외부주차장으로 인해 차량동선이 시민의 보행동선을 우선하고 있다. 또한, 외부주차장이 차지하는 면적만큼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공간이 소외되어 왔다.
- 앞으로는 초기 계획단계에서 검토하여 지하주차장이나 후면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득이한 경우는 심의 시 사유를 제출받아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도로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곳에 민원실이 설치된다.

- 공공건축물의 주요 목적은 시민들의 민원처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원실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공건축물 설계 시 민원실 위치를 최대한 도로에서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아울러 민원실의 경우 내부 환경을 밝고 쾌적하게 꾸며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임산부, 유아, 장애인,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애 없는 디자인이 적용된다.

- 앞으로 공공건축물을 찾는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의 이용이 한층 쉬워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진입부 부분에 돌출된 턱이나 장애물들의 설치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에 이유 없이 설치된 모서리, 턱 등도 계획단계 시 검토하여 제한할 계획이다. 장애 없는 디자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디자인심의 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걸림돌 없이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1. 현황 및 문제점

서울은 양적인 팽창 위주의 성장으로 인해 한정된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도시디자인 요소가 밀집되었다. 그 결과 과밀하고 답답한 도시, 산만하고 불편한 도시, 교통약자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도시, 개발과 설치에 급급하여 환경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도시가 되었다.

그동안의 공공건축물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디자인되어 도시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고, 형태와 재료 등에서도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이미지를 띠어 왔다.

또한, 휴게공간·소규모 광장·편의시설 등 시민의 사용에 대한 배려 부족, 전면 주차장 등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시스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시민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형태 등 공공건축물의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측면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왔다.

● <b>형 태</b>	획일적, 주변과 부조화, 육중한 재료감
● <b>배 치</b>	전면주차장 설치, 보행 접근 불편
● <b>동 선</b>	차량우선, 보행동선 단절
● <b>기 능</b>	노약자, 유모차, 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용 불편
● <b>외 관</b>	권위적, 폐쇄적, 위압적
● <b>환 경</b>	휴게공간, 소규모 광장, 편의시설 부족

<현황분석>

## 2. 기본방향

모든 건축물은 일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영역 일부를 제공해야 한다. 그 동안 민간 건축물의 경우 각종 심의를 통해 공공영역의 일부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의 경우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민간을 선도하는 모범이 되도록 건축물의 기능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민을 배려하고 공공성을 대폭 확대한 공공건축물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 1 획일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고품격화**
- 2 공공의 권위를 허물고 **사용자 중심의 열린 디자인** 지향
- 3 행정 편의의 문 높이를 낮추고 **쾌적한 서비스로 배려하는 공간** 조성
- 4 성장 위주의 조급함을 벗어나 **친환경, 고효율의 미래지향** 환경 조성

또한, 획일적 이미지 탈피, 사용자 중심의 열린 디자인, 쾌적한 서비스 공간조성, 친환경·고효율의 미래지향이라는 기본방향을 토대로 공공건축물 개선을 위해 시행해야 할 디자인 10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3. 공공건축물 디자인 10원칙

#### 01 틀에 박힌 획일적 형태의 건축물에서 창조적 디자인 유도

**제한** 창조적 노력없이 유사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답습하는 건축 형태

▶ 디자인 심의시 디자인 프로세스 도면 제출



**권장**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의 기억, 주변과 조화 등 정체성 있는 디자인



#### 02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조망권을 보호하며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제한** 주요 경관 축을 훼손하거나 도시경관을 가로막는 건축 행위

▶ 디자인 심의시 인근의 주요 경관축 단면도나 경관시뮬레이션 도면 제출



**권장** 주변 경관을 보호하며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건축물



### 03

## 과도한 상징표현을 제한하고 주변 환경과 색채, 외관 등을 조화

**제한** 과도한 형태, 색채나 직설적 디자인으로 주변과 부조화 건축물

▶ 디자인 심의시 대지 반경 주변 건축물 포함 현황자료 제출



**권장** 주변과 건축선을 일치시키고 색채, 외관 등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건축물



### 04

## 보행인에게 위압감을 주는 옹벽 설치를 제한하고 자연지형에 순응

**제한** 무차별적으로 구릉지에 옹벽을 설치하여 인공지반 조성하는 행위

▶ 불가피한 경우 디자인 심의시 대지 고저차 도면 제출



**권장**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가치가 있는 주변 자연물(나무, 돌 등)을 이용한 건축물



## 05

###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건축물 외관형태 개선

**제한** 과도하게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담장 설치

▶ 디자인 심의시 안전 및 보안상 설치 필요한 경우 사유 제출



**권장** 시민들의 접근이 자유롭고 위압감을 주지 않는 건축물



## 06

###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행권을 우선하는 건축물 진입부 배치계획 정립

**제한**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건축물 전면부 일률적인 외부주차장 설치

▶ 건물 용도, 기능상 외부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디자인 심의시 사유 제출



**권장** 건축물 지하 또는 후면주차장 등 설치



## 07

### 건축대지 내 이동 동선 확보로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제한** 건축으로 인해 대지 내 시민들의 보행권이 단절되는 계획

▶ 디자인 심의시 주변 보행 동선계획도 제출



**권장** 대지 내에 주변 보행로와 연계된 통로 확보 및 실내형 공개공지 설치



## 08

###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도심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제한** 건축물 1층 로비공간 지나친 차폐도 적용한 디자인 불허

▶ 디자인 심의시 1층 로비 및 주요 서비스 공간 실내투시도 제출



**권장** 빈공간(Void), 조명 등을 이용하여 밝고 쾌적한 이미지를 주는 건축물



09

조화롭고 쾌적한 디자인의 건축물 상부 입면계획 유도

**제한** 옥상부 설비 시설물이나 탑 등의 과도한 돌출

▶ 기능상 설치가 필요한 경우 디자인 심의시 사유 제출



**권장** 옥상부 설비시설물 등을 건축물과 일체화하고 건축물 옥상녹화



10

건축물 외부공간 및 저층부에 시민들을 위한 친화적 공간 제공

**제한** 시민 편의시설에 대한 고려가 없는 행정 중심의 디자인

▶ 디자인 심의시 시민 편의시설을 배치도에 포함 제출



**권장** · 녹지공간, 수공간, 휴게공간 등을 적절하게 포함하여 디자인  
· 주요 민원공간은 도로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



##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적용 이미지



디자인서울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 1

## 개요

---

### 1.1 정의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사 단체가 발주,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 쓰이는 적용 대상의 명칭이나 정의는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현행 관련법상 명칭이나 정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1.2 목표

- 공공건축의 본질인 시민과 이용자 위주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공공건축의 디자인 질을 향상시킨다.
- 공공건축물 디자인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 원칙과 기준, 세부적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 1.3 이용 지침

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디자인의 심의·자문, 발주, 실행 및 유지 관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규정들은 제반 여건 및 상황에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1.3.1 적용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건축물 디자인의 원칙적 측면을 다룬다. 구체적인 사안별 적용의 수준과 예외 사항 처리 등은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하여 결정한다.

#### 1.3.2 적용 대상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축물에 인접한 외부 공간 또는 준 외부 공간에서, 본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디자인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초점을 둔다. 공간 자체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된다.

### 1.3.3 규정 유형

공통 및 세부 가이드라인은 필수 사항(★)과 권장 사항(●)으로 나뉘어 기술된다. 강제성의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규정 사항은 디자인 심의·자문, 발주, 실행, 유지 관리 시 고려 사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1.3.4 가이드라인 규정 항목

본 가이드라인에서 각 적용 대상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규정된다.

#### 1.3.4.1 위치 환경

건물이 위치하는 주변 환경에 따라 건물 디자인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사업 계획 시 대지의 위치에 따른 용도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1.3.4.2 집합적 건축 경관

집합적 형태로서 주변과의 관계에서 개개 건물의 윤곽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 1.3.4.3 공공공간

전체 가로연속성 안에서 공공건축물의 외부 공간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 1.3.4.4 대지 단위 외부 공간

개개 대지의 외부 공간, 즉 개개 건물과 관련하여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 1.3.4.5 건물 저층부

보행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주요 보행 경관으로서,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 1.3.4.6 건물 입면

건물의 표정을 좌우하는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 1.3.4.7 기타 건물 부속물

건물의 미관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기타 건물 부속물 디자인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 1.4 적용 대상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기능에 따라 총 32종으로 나뉜다.

적용 대상의 분류와 다른 부분의 참고 적용 대상은 [표-1]과 같다.

[표-1] <디자인서울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분류

공공건축물		참고 공공공간	참고 공공시설물	참고 공공시각매체	참고 옥외광고물	
대분류	소분류					
행정 및 공공 기반 건축물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 가로</li> <li>건축물 부설 광장</li> <li>공공건축물 외부 공간</li> <li>공개 공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게 시설물</li> <li>휴지통</li> <li>자전거 보관대</li> <li>볼라드</li> <li>방음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안내 표지</li> <li>주차 안내</li> <li>보행자 안내</li> <li>건물 번호</li> <li>기타 영상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상단 가로형 간판</li> <li>지주 이용 간판</li> <li>전광류</li> </ul>	
	동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 가로</li> <li>도시 공원</li> <li>공공건축물 외부 공간</li> <li>공개 공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변 옹벽</li> <li>지상 기기</li> <li>지하철 환기구</li> <li>디지털 영상매체</li> </ul>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 가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호등주</li> </ul>			
	지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건축물 외부 공간</li> </ul>				
	치안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 공지</li> </ul>				
	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건축물 외부 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볼라드</li> <li>신호등주</li> </ul>			
	119 안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 공지</li> </ul>				
	우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 가로</li> <li>도시 공원</li> <li>공공건축물 외부 공간</li> <li>공개 공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지통</li> <li>자전거 보관대</li> <li>우체통</li> <li>방음벽</li> <li>도로변 옹벽</li> <li>지상 기기</li> <li>지하철 환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광고물 전 대상]</li> </ul>
	전화국					
	관광 안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 가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 안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 안내</li> </ul>		
복지 관련 건축물	보육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 가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안내 표지</li> <li>주차 안내</li> <li>보행자 안내</li> <li>건물 번호</li> <li>기타 영상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상단 가로형 간판</li> <li>지주 이용 간판</li> </ul>	
	노인 복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건축물 외부 공간</li> </ul>				
	여성 복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 공지</li> </ul>				
	청소년 수련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 가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게 시설물</li> <li>음수대</li> <li>자전거 보관대</li> <li>보호 펜스</li> <li>방음벽</li> <li>도로변 옹벽</li> <li>지상 기기</li> <li>지하철 환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안내 표지</li> <li>주차 안내</li> <li>보행자 안내</li> <li>건물 번호</li> <li>기타 영상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상단 가로형 간판</li> <li>지주 이용 간판</li> </ul>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건축물 외부 공간</li> </ul>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 공지</li> </ul>				
	공공도서관					

공공건축물		참고 공공공간	참고 공공시설물	참고 공공시각매체	참고 옥외광고물
대분류	소분류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예술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 가로</li> <li>건축물 부설 광장</li> <li>공공건축물 외부 공간</li> <li>공개 공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게 시설물</li> <li>휴지통</li> <li>자전거 보관대</li> <li>우체통</li> <li>볼라드</li> <li>방음벽</li> <li>도로변 옹벽</li> <li>지상 기기</li> <li>지하철 환기구</li> <li>디지털 영상매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안내 표지</li> <li>주차 안내</li> <li>보행자 안내</li> <li>건물 번호</li> <li>기타 영상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상단 가로형 간판</li> <li>지주 이용 간판</li> <li>전광류</li> </ul>
	구민회관				
	전시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환경 및 위생 관련 건축물	자원 회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 가로</li> <li>도시 공원</li> <li>공공건축물 외부 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변 옹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안내 표지</li> <li>주차 안내</li> <li>보행자 안내</li> <li>건물 번호</li> <li>기타 영상 정보</li> </ul>	
	재활용센터				
	공중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화장실</li> </ul>			
의료 관련 건축물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건축물 외부 공간</li> <li>공개 공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변 옹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안내 표지</li> <li>주차 안내</li> <li>보행자 안내</li> <li>건물 번호</li> <li>기타 영상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상단 가로형 간판</li> <li>지주 이용 간판</li> </ul>
	보건소				
기타 건축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건축물 외부 공간</li> <li>공개 공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지통</li> <li>자전거 보관대</li> <li>방음벽</li> <li>도로변 옹벽</li> <li>디지털 영상매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자 안내</li> <li>주차 안내</li> <li>도로명</li> <li>건물 번호</li> <li>기타 영상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상단 가로형 간판</li> <li>지주 이용 간판</li> </ul>
	복합 건축물				

(표 끝)

## 2 기본 방향

---

### 2.1 현황 및 문제점

서울의 공공건축물이 노출하는 문제점 중, 특히 긴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2.1.1 경관성 측면

-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디자인되어 경관을 해친다.
- 형태와 재료 등에서 권위적, 폐쇄적, 위압적 인상을 준다.

#### 2.1.2 공공성 측면

- 휴게 공간, 소규모 광장, 편의 시설 등 시민의 사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사용자가 아닌 관리 위주로 계획되어 공공적 기능성이 떨어진다.

\* 모든 건축물은 일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공공 시설 영역을 제공한다. 민간 건축물은 각종 심의를 통하여 공공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은 오히려 그러한 측면에서 미흡하다.

#### 2.1.3 접근성 측면

- 건축물 전면이 주차장화되어 보행자의 접근이 불편하다.
- 차량 동선 중심으로 계획되어 보행 동선이 단절된다.
- 노약자, 유모차,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

#### 2.1.4 환경성 측면

- 단순 기능과 성장 위주로 계획되어 환경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시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

---

### 2.2 개선 방향

본 가이드라인은 서울 공공건축물 디자인의 현황 분석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지향한다.

- 2.2.1 **다양하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기존의 획일적인 공공건축물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추구한다.
- 2.2.2 **사용자 중심의 열린 공공건축물**  
권위적인 담장을 허물고 시민의 공공적 사용과 커뮤니티 활동을 돕는 열린 디자인을 지향한다.
- 2.2.3 **쾌적한 서비스로 시민을 배려하는 공공건축물**  
행정 편의적 디자인에서 벗어나 쾌적한 도시 환경을 배려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 2.2.4 **친환경, 고효율의 미래 지향적 공공건축물**  
개발 및 성장 위주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 고효율의 미래 지향적 환경을 조성한다.

# 3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의 10대 원칙

본 가이드라인은 현황 분석과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의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 1 획일적 형태에서 벗어나는 창조적 디자인을 유도한다
- 2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한다
- 3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외관을 갖춘다
- 4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옹벽 설치를 제한하고 자연지형을 존중한다
- 5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요소는 지양한다
- 6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행권을 우선하는 건축물 진입부 배치 계획을 정립한다
- 7 건축대지 내 보행 동선 확보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한다
- 8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을 조성한다
- 9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 상부 입면 계획을 유도한다
- 10 건축물 외부 공간 및 저층부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 3.1 획일적 형태에서 벗어나는 창조적 디자인을 유도한다

- 관습화된 유사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답습하는 건축 형태를 금지한다.



그림 1. 관습적인 디자인

### 3.2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한다

- 주요 도시 경관을 훼손하거나 가로막는 건축물을 금지한다.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거나 시각 통로를 확보한다.
  - 디자인 심의·자문 시 대상 지역의 주요 인근 경관축 단면도나 경관 시뮬레이션 도면을 제출한다.
- \* 대규모 공공건축물 위주로 적용한다.



그림 2. 자연 경관을 가로막는 건축물

### 3.3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외관을 갖춘다

- 과장된 형태와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채는 지양한다.
- 주변 건축물과의 건축선 정렬을 권장한다.
- 공공기관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직설적 디자인을 금지한다.
- 디자인 심의·자문 시 대지 주변 건축물의 현황 자료를 제출한다.



그림 3. 공공기관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직설적 디자인

### 3.4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옹벽 설치를 제한하고 자연 지형을 존중한다

- 구릉지의 절토와 인공지반 조성으로 인한 위압적인 옹벽 설치는 지양한다.
  -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과 가로 연접부 건축 프로그램 배치를 통한 가로 활성화를 권장한다.
  - 옹벽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디자인 심의·자문 시 사유를 설명하는 도면을 제출한다.
- \* 대규모 공공건축물 위주로 적용한다.



그림 4. 위압적인 옹벽

3.5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요소는 지양한다**

- 불필요하게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담장 설치하는 지양한다.
- 시민의 접근이 자유로운 건축물 디자인을 권장한다.
- 안전 및 보안상 담장이나 펜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디자인 심의·자문 시 사유를 제출한다.



그림 5.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

3.6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행권을 우선하는  
건축물 진입부 배치 계획을 정립한다**

- 공공건축물 내외부에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과 장애 없는(barrier-free) 디자인을 적용한다.
- 공공건축물의 전면 공지와 보행 가로의 단차가 급격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건축물 전면 진입부 옥외주차장 설치하는 지양한다.
- 공공건축물의 전면 진입 외부 공간은 도심형 공원, 광장 등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 후면 주차장을 권장한다.



그림 6. 주차 차량으로 뒤덮인 건축물  
전면 공간

3.7 **건축대지 내 보행 동선 확보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한다**

- 지역 주민의 통행을 단절하는 공공건축물 계획을 금지한다.
- 주변 보행 가로와 연계되는 대지 내 보행로의 확보를 권장한다.
- 공공건축물 저층부에 주변 보행 가로와 연계되는 실내형 공개 공간의 설치를 권장한다.
- 보차 혼합 도로와 연결한 공공건축물은 연결부 대지 내에 보도를 확보한다.
- 디자인 심의·자문 시 배치도에 공공건축물 주변 보행인의 동선 계획도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 \* 대·중 규모 건축물 위주로 적용한다.



그림 7. 보행 공간 부재

**3.8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을 조성한다**

- 공공건축물 부속물의 보행 가로 방치를 금지한다.
- 시정 홍보 게시판, 전광류 광고물, 자전거 보관대 등은 건축물 입면과 통합 설계한다.
- 공공시설물의 공공건축물 대지 내 편입을 권장한다.
- 공공건축물 사업 기획 시 관계 부서가 서로 협의하여 편입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결정하며 설계 발주 시 자료를 제공한다.
- 공공건축물의 1층 로비 공간에는 자연 채광과 높은 층고 등을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 디자인 심의·자문 시 로비와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 공간의 실내 투시도를 제출한다.



그림 8. 개방성 없는 공간

**3.9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 상부 입면 계획을 유도한다**

- 옥상부 설비 시설물이나 송신탑 등의 지나친 돌출을 금지한다.
- 기계 설비탑 등은 건물과 일체화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옥탑이나 옥상부 설비 시설물 등을 가벽이나 스크린으로 가릴 수 있는 입면 디자인을 권장한다.
- 옥상부 설비 시설물이나 송신탑 등의 노출이 기능상 불가피한 경우 디자인 심의·자문 시 사유를 제출한다.



그림 9. 지나치게 돌출하여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상부 시설물

**3.10 건축물 외부 공간 및 저층부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 시민 이용 민원 공간은 보행 가로에서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
-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은 시민 휴게 위주의 도심형 공원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10. 공공성이 떨어지는 외부 공간

# 4 일반 가이드라인

## 4.1 개요

[표-2] 공공건축물 공동 도시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 개요

규정 항목	목적	규정 내용
<b>위치 환경</b> 건물이 위치하는 주변 환경에 따라 건물 디자인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사업 계획 시 대지의 위치에 따른 용도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시민의 공적 자산인 주요 경관을 특정 건물이 독점하여 사유화하는 일을 방지한다.	시각 통로 확보 접근성 보장
	기존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하는 창의적 건물을 유도한다.	창의적 건물 디자인
	구릉지 건물의 옹벽 최소화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옹벽 제한
<b>집합적 건축 경관</b> 집합적 형태로서 주변과의 관계에서 개개 건물의 윤곽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연속적인 가로벽 형성을 유도한다.	건축선 통일 모퉁이 건축선 통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한다.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돌출 입면 요소 지양
<b>공공공간</b> 전체 가로의 연속성 안에서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주변 가로와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대지 관통 보행로 또는 건물 관통 실내형 공개 공간 확보 대지 내 보도 확보 무분별한 방음벽 설치 지양
	공개 공지의 통합적 사용을 유도한다.	공개 공지의 통합적 배치와 사용 공개 공지 내 공공시설물 편입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의 성격을 규정한다.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 본 가이드라인 '세부 가이드라인' 참조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참조
<b>대지 단위 외부 공간</b> 개개 대지의 외부 공간, 즉 개개 건물과 관련하여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시민의 보행권을 강화하고 보행 경관을 향상시킨다.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 분리 보행 가로 연결 전면 공지의 경사도 제한 옥외주차장 위치 제한 전면 외부 공간의 주차장화 금지 정차로 설치
	건축 법규에서 요구하는 대지 내 공지나 조경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대지 내 공지와 조경 면적 배치 조경 면적이나 가로변 선형 녹지대 내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b>건물 저층부</b> 보행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주요 보행 경관으로서,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공공건축물 저층부의 공공성을 증진시킨다.	건물 진입부의 급격한 단차 지양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 적용 저층부 용도 조절 실내형 공개 공간 설치 권장
	저층부 미관 저해 요소를 제한한다.	저층부 미관 저해 요소 제한

규정 항목	목적	규정 내용
<b>건물입면</b> 건물의 표정을 좌우하는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형성한다.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입면 디자인 지양
		재질과 색채
		건물 옥상부와 최상층 디자인
		보행 가로 연접부 방음벽 제한
<b>기타 건물 부속물</b> 건물의 미관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기타 건물 부속물 디자인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건물 부속물의 통합 디자인을 유도한다.	기계 설비 노출 금지
		건축물과 부속물의 통합 디자인
	시각적 공해 요소를 제한한다.	국기 게양대 설치 규정 완화
건물명 간판 등 옥외광고물 제한		
시민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강화한다.	주거지 내 지나친 야간 경관 조명 금지	
		담장과 펜스

## 4.2 디자인 가이드라인

### 4.2.1 위치 환경

#### 4.2.1.1 시각 통로 확보

- ★ 인근 주요 보행 가로나 한 블록 이상 떨어진 곳에서 주요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시각 통로를 확보한다.

#### 4.2.1.2 접근성 보장

- ★ 건물이 주요 경관과 인접하여 위치할 때 일반 시민과 보행자들이 주요 경관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지 내 보행로나 실내형 공개 공간을 확보한다.

#### 4.2.1.3 창의적 건물 디자인

- 주변의 역사 지구 또는 문화재를 존중하거나 적극적 디자인 요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4.2.1.4 옹벽 제한

- ★ 가 옹벽 발생을 최소화한다.
- 나 옹벽이 발생하는 곳에 건축 프로그램 배치를 우선으로 하되 인근 공공시설물의 통합을 권장한다.
- ★ 다 지나치게 높은 옹벽 설치를 금지한다.
- 라 입면 녹화나 자연석 사용을 권장한다.
- 마 옹벽에 공공시각매체 적용을 권장한다.



그림 11. 위압적인 옹벽의 예

## 4.2.2 집합적 건축 경관

### 4.2.2.1 건축선 정렬

- 개별 건축물의 건축선은 되도록 주변 건축선과 정렬할 것을 권장한다.

### 4.2.2.2 모퉁이 건축선

- 건축선이 뚜렷한 두 가로의 모퉁이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건축선은 되도록 양쪽 가로 건축선에 정렬시킬 것을 권장한다.

### 4.2.2.3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가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권장한다.
- 나 급격한 돌출 경관은 지양한다.

### 4.2.2.4 돌출 입면 요소 지양

- 주변의 건물 크기가 뚜렷하게 일정한 지역에 거대 규모의 건물이 위치하는 경우 기존의 건물 규모와 최대한 조화되도록 입면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4.2.3 공공공간

### 4.2.3.1 대지 관통 보행로 또는 건물 관통 실내형 공개 공간 확보

- ★ 가 대규모 필지 개발을 통한 단지 조성이나 건물 신축 시, 대지를 관통하여 주변의 기존 보행 가로와 연결되는 보행로를 확보한다.
- 나 또는, 건물을 관통하고 24시간 개방 가능한 실내형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 대지 주변 보행 가로와 연결시킬 것을 권장한다.

### 4.2.3.2 대지 내 보도 확보

-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연접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대지 내 도로연접부에 보도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4.2.3.3 무분별한 방음벽 설치 지양

- 가 방음벽의 무분별한 설치 지양한다.
- 나 도로와 건축물의 이격이나 방음림 설치를 통한 소음 차단을 권장한다.

### 4.2.3.4 공개 공지의 통합적 배치와 사용

- 가 인접 공개 공지의 성격과 위치를 고려하여 연계·통합이 가능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나 공개 공지가 보행 가로와 연접한 경우 급격한 단차는 지양한다.



그림 12. 실내형 공개 공간의 예



그림 13. 대지 내 보도 확보의 예



그림 14. 단차 등 물리적 경계는 없으나 서로 다른 색채, 재질 등 조화롭지 않은 디자인의 공개공지

- 다 건축물간 공개공지가 서로 면할 경우 통합디자인하도록 권장한다.

#### 4.2.3.5 공개 공지 내 공공시설물 편입

- 인접 지하철 출입구, 지하철 환기구 등 공공시설물의 공개 공지 내 편입을 권장한다.

#### 4.2.3.6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

- 가 공공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외부공간의 성격을 달리하되, 인접가로(또는 인접 공공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통합 디자인 할 것을 권장한다.
- 나 공공건축물의 전면 공지와 보행 가로 간의 급격한 단차는 지양한다.

#### 4.2.4 대지 단위 외부 공간

##### 4.2.4.1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 분리

- ★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한다. 보행 진입은 전면 주 보행로에서, 차량 진입은 이면도로에서 계획한다. 단, 비상 차량의 전면 출입은 허용한다.

##### 4.2.4.2 보행 가로 연접 전면 공지의 경사도 제한

- 가 공공건축물 전면 공지의 턱 설치의 지양한다.
- ★ 나 보행 가로와 연접한 전면 공지는 보행 가로를 포함한 횡경사가 완만하도록 계획한다.

##### 4.2.4.3 옥외주차장 위치 제한

- 가 주 보행로와 건물 주 출입구 사이 옥외주차장 설치의 지양한다.
- 나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 후면 옥외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 ★ 다 지상층을 지하 주차장으로 계획하는 경우 보행 가로 경계 부근의 응벽 발생을 금지한다.
- ★ 라 가설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 빌딩 설치 시 건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본 건물의 디자인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 4.2.4.4 전면 외부 공간의 주차장화 금지

- ★ 건물의 전면 공지나 필로티 하부의 주차 차량 점유를 금지한다.

##### 4.2.4.5 정차로 설치

- 주차 수요보다 정차 수요가 많은 건물에는 정차로 설치를 권장한다. 단, 이 경우 정차로가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그림 15. 인접 공개공지간 연계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공개공지



그림 16. 바닥패턴 일체화를 통한 통합적 디자인



그림 17. 보행 가로와 전면 공지 간 급격한 단차



그림 18. 건물 전면광장의 예



그림 19. 건물 전면 옥외주차장을 도심형

#### 4.2.4.6 대지 내 공지와 조경 면적의 배치

- 건축법 요구 사항인 조경 면적은 인접 대지의 공지나 조경 면적과 연결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4.2.4.7 조경 면적이거나 가로변 선형 녹지대 내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 ★ 공공건축물의 조경 면적이거나 가로변 선형 녹지대 내에 공공시설물의 관리 시설물인 지상 기기, 교통 신호 제어기, 지하철 환기구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 4.2.5 건물 저층부

##### 4.2.5.1 건물 진입부의 급격한 단차 지양

- 지형의 고저차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 주 진입구의 계단과 캐노피 설치의 지양한다.

##### 4.2.5.2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

- ★ 가 모든 공공건축물에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 ★ 나 우회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4.2.5.3 저층부 용도 조절

- 시민 휴게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개방형 실내 로비 설치를 권장한다.

##### 4.2.5.4 실내형 공개 공간 설치 권장

- 가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를 위하여 건물의 저층부를 관통하는 실내형 공개 공간 설치를 권장한다.
- 나 실내형 공개 공간은 24시간 개방을 권장한다. 단, 안전성 확보에 유의한다.
- ★ 다 실내형 공개 공간은 보행로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 4.2.5.5 저층부 미관 저해 요소 제한

- ★ 가 저층부의 돌출 부스형 증축을 금지한다.
- ★ 나 저층부 건물 벽에 건물명 이외의 간판이나 광고물, 현수막 부착을 금지한다.
- 다 공공건축물의 프로그램 안내 정보나 게시판 등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 설계 시 입면과 통합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20. 개방형 실내 로비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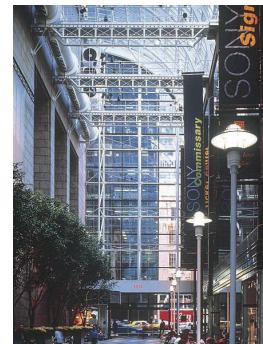


그림 21. 실내형 공개 공간의 예



그림 22. 불필요한 계단과 혼란스러운 저층부 부속물

#### 4.2.6 건물 입면

##### 4.2.6.1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입면 디자인 지양

- ★ 가 획일적 입면 디자인을 금지한다.
- ★ 나 공공기관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직설적 입면 디자인을 금지한다.
- 다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과장된 입면 디자인은 지양한다.
- ★ 라 건물의 측후면 입면은 정면과 함께 통합 디자인한다.

##### 4.2.6.2 재질과 색채

- 가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되, 재료 자체의 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 계획은 지양한다.
- ★ 나 내구성 있고 관리, 보수,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4.2.6.3 건물 옥상부와 최상층 디자인

- ★ 가 옥상부의 기계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 나 옥탑, 승강기 기계실, 태양열 집열판, 친환경 기계 설비 등의 옥상 돌출부가 건물 전체와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다 건물 옥상부의 녹화를 권장한다.

#### 4.2.7 기타 건물 부속물

##### 4.2.7.1 기계 설비 노출 금지

- ★ 가 에어컨 실외기, 건물 분전함 등의 외부 노출 및 건물 외벽 부착을 금지한다.
- ★ 나 건물 설계 시 에어컨 실외기, 건물 분전함 등의 차폐 장치를 계획한다.

##### 4.2.7.2 건축물과 부속물의 통합 디자인

- ★ 송신탑, 자전거 보관대, 빌보드형 매체 등 건물 부속물은 건물 입면 계획 시 통합 설계한다.

##### 4.2.7.3 국기 게양대 설치 규정 완화

- 공공건축물의 국기 게양대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 국기 게양대의 디자인은 건물 입면과 통합적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4.2.7.4 건물명 간판 등 옥외광고물 제한

- 가 건물명 간판은 입체 문자형을 권장한다.
- ★ 나 현판은 2개 이상 설치하지 않는다.
- 다 건물명 간판과 현판을 제외한 홍보용 현수막과 기타 옥외광고물의 부착은 지양한다.

★ 라 기타 옥외광고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 4.2.7.5 주거지 내 지나친 야간 경관 조명 금지

★ 가 주거지 내에 위치한 공공건축물의 지나친 야간 경관 조명을 금지한다.

★ 나 야간 경관 조명의 설치와 휘도는 <디자인서울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 4.2.7.6 담장과 펜스

- 안전이나 보안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건축물 주변 담장이나 펜스 설치하는 지양한다.

# 5 세부 가이드라인

## 5.1 행정 및 공공 기반 건축물

### 5.1.1 현황 및 문제점

- 담장으로 인한 폐쇄성, 지나치게 높은 계단과 거대한 캐노피 등으로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이미지를 띤다.
- 건물 전면 차량 진·출입이 주 보행로의 연속성을 끊고 보행권을 위협한다.
- 보행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이 부족하다.
- 대규모 건물의 경우 대지 연접부의 폐쇄적 디자인으로 주변 가로가 비활성화된다.
- 소방서나 119 안전센터의 경우 소방차량의 진·출입이 보행권을 위협한다.
- 소방서나 119 안전센터의 지나치게 직설적인 입면 디자인은 도시 경관의 질을 저하시킨다.
- 보행로의 주차 차량들과 가설 주차장이 도시 경관을 훼손한다.
- 우체국 저층 금융 업무 부스의 증축과 간판의 난립은 시각적 공해를 유발한다.



그림 23. 주 진입로에서 본 공공건축물 경관의 예

### 5.1.2 기본 방향

-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친근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건물 디자인을 권장한다.
- 열린 행정 서비스와 함께 친근하고 열린 공공건축물의 이미지를 구현한다.
- 대지 내 보행로 확보, 실내형 공개 공간 확보, 담장 허물기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보행권을 강화한다.
-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는 전면 공간의 보행권을 강화하며 개방차고지 내 미관 저해 요소를 규제한다.
- 우체국은 보행 가로상 차량 주·정차를 규제하고 금융 업무 부스의 증축과 광고물 설치를 제한한다.

### 5.1.3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청사

#### 5.1.3.1 위치 환경

★ 본 가이드라인 4.2.1의 규정을 따른다.

#### 5.1.3.2 공공공간

★가 본 가이드라인 4.2.3의 규정을 따른다.

●나 공공청사의 보행 가로와 연결한 공공공간은 근린 광장, 경관 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으로 설계하여 시민 휴게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중정형 외부 공간도 허용하되 24시간 개방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24. 보행 가로와 연결한 광장형 외부공간의 예

#### 5.1.3.3 대지 단위 외부 공간

★ 본 가이드라인 4.2.4의 규정을 따른다.

#### 5.1.3.4 건물 저층부

★가 본 가이드라인 4.2.5의 규정을 따른다.

★나 민원실은 건물 주 진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다 민원실의 공간 배치는 행정 편의보다 이용자 편의를 위주로 계획한다.

★라 저층에 근린 상업 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광고물과 게시판 등은 입면 계획 시 통합적으로 디자인한다.

#### 5.1.3.5 건물 입면

★가 본 가이드라인 4.2.6의 규정을 따른다.

★나 권위적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위압감을 주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다 건물 수명을 고려하여 쉽게 싫증나지 않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라 공해에 강하고 더러움을 덜 타는 재료를 사용한다.



그림 25. 높은 계단과 캐노피로 인한 권위적인 디자인

#### 5.1.3.6 기타 건물 부속물

★가 본 가이드라인 4.2.7의 규정을 따른다.

★나 개방형 공공화장실과 자전거 보관대, 게시판 등은 건물 설계 시 통합하여 디자인하고,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그림 26. 개방감 있는 전면부와 입면 디자인

### 5.1.4 디자인 가이드라인: 동 주민센터

#### 5.1.4.1 위치 환경

★가 본 가이드라인 4.2.1.4의 '옹벽 제한' 규정을 따른다.

- ★ 나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기획 시 인근 공공건축물의 유사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다 타 건물 임대나 인근 복합 공공건축물로의 이전을 계획하는 경우, 기존 부지는 소공원, 단독주택지 내 공용 주차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5.1.4.2 집합적 건축 경관

- ★ 가 본 가이드라인 4.2.2.1 ‘건축선 정렬’ 규정을 따른다.
- 나 이면도로에 위치한 경우 건물 모퉁이의 과장된 디자인은 지양한다.

#### 5.1.4.3 공공공간

- 가 보차 혼합 도로와 연결한 동 주민센터의 경우 보행자 보호 구역 확보로 인한 건축선 비정렬은 허용한다.
- 나 보행 가로와 연결한 건물의 전면에는 소공원이나 건축물 부설 광장 설치를 권장한다.

#### 5.1.4.4 대지 단위 외부 공간

- ★ 가 본 가이드라인 4.2.4.1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 분리’, 4.2.4.2 ‘보행 가로 연결 전면 공지의 경사도 제한’, 4.2.4.3 ‘옥외주차장 위치 제한’, 4.2.4.4 ‘전면 외부 공간의 주차장화 금지’ 규정을 따른다.
- ★ 나 보행자 위주로 주차 동선을 계획한다.
- 다 건물 전면 필로티 하부의 주차장 설치는 지양한다.



그림 27. 동 주민센터에 조성된 외부 공간의 예

#### 5.1.4.5 건물 저층부

- ★ 가 본 가이드라인 4.2.5.1 ‘건물 진입부의 급격한 단차 지양’, 4.2.5.2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 4.2.5.5 ‘저층부 미관 저해 요소 제한’ 규정을 따른다.
- ★ 나 계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 설계 시 입면 디자인에 반영한다.



그림 28. 동 주민센터에 조성된 중정형 외부 공간의 예

#### 5.1.4.6 건물 입면

- ★ 본 가이드라인 4.2.6의 규정을 따른다.

#### 5.1.4.7 기타 건물 부속물

- ★ 본 가이드라인 4.2.7의 규정을 따른다.

## 5.1.5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 5.1.5.1 위치 환경

- 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중심에, 지구대와 치안센터는 도보 순찰과 기동 순찰 등의 중점 업무에 따라 위치할 것을 권장한다.
- 나 평지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나, 경사지에 위치한 경우 지형을 이용한 입체적 배치 계획을 권장한다.
- 다 신축의 경우 경찰 차량과 오토바이 주차장을 위한 충분한 부지의 확보를 권장한다.
- ★ 라 규모가 큰 경찰서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4.2.1.1 ‘시각 통로 확보’ 규정을 따른다.

### 5.1.5.2 집합적 건축 경관

- ★ 경찰서는 본 가이드라인 4.2.2의 규정을 따르되, 부지가 협소한 지구대나 치안센터는 그 적용을 완화한다.

### 5.1.5.3 공공공간

- ★ 본 가이드라인 4.2.3.2 ‘대지 내 보도 확보’, 4.2.3.4 ‘공개 공지의 통합적 배치와 사용’ 규정을 따른다.

### 5.1.5.4 대지 단위 외부 공간

- ★ 가 본 가이드라인 4.2.4.1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 분리’ 규정을 따른다.
- 나 부지가 협소한 지구대나 치안센터에는 정차로나 포켓 차로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 5.1.5.5 건물 저층부

- 가 지형의 고저차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 주 진입구의 계단 설치는 지양한다.
- 나 위압적인 캐노피와 캐노피 전면 광고 문구 부착을 지양한다.

### 5.1.5.6 건물 입면

- ★ 가 본 가이드라인 4.2.6의 규정을 따른다.
- 나 권위적인 건물 디자인 탈피와 친근한 입면 디자인을 권장한다.
- 다 지역 치안과 범죄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쉽게 인지되는 디자인이 바람직하되, 직설적인 디자인은 지양한다.

### 5.1.5.7 기타 건물 부속물

- ★ 가 본 가이드라인 4.2.7.1 ‘기계 설비 노출 금지’, 4.2.7.2 ‘건축물과 부속물의 통합 디자인’ 규정을 따른다.

- 나 주거지 내라도 야간 조명을 허용한다.
- 다 홍보물의 무분별한 부착은 지양한다.

### 5.1.6 디자인 가이드라인: 소방서, 119 안전센터

#### 5.1.6.1 위치 환경

- 가 차량 접근이 쉽고 교통량이 적은 곳에 위치할 것을 권장한다.
- 나 평지에 위치하며 차량 정비, 장비 점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다 넓은 전면도로에 면한 부지에 위치하도록 하고, 주변 교통 통제가 가능한 도로에 면할 것을 권장한다.

#### 5.1.6.2 집합적 건축 경관

- 차고지 높이로 인한 건축선과 스카이라인의 비정렬은 허용한다.

#### 5.1.6.3 대지 단위 외부 공간

- ★ 가 소방차고 전면 외부 공간과 차로의 턱을 없애고 차량 진·출입 장애물 설치를 금지한다.
- 나 소방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하여 인접 보행 가로와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 다 인접 보행 가로와 연결되는 전면 공간의 바닥 포장재는 차도와 구분하되 인근 보도와 유사하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라 보행인 보호를 위하여 인접 보행 가로와 소방차량 진·출입 전면 공간의 경계에 볼라드나 노면 표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마 교통 통제를 위하여 경광등과 신호등을 설치한다.
- 바 공공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주차 공간의 확보를 권장한다.

#### 5.1.6.4 건물 저층부

- ★ 가 본 가이드라인 4.2.5.5 ‘저층부 미관 저해 요소 제한’ 규정을 따른다.
- ★ 나 개방차고지 내에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한다.
- 다 개방차고지 내의 혼란한 소방 업무 장비가 눈에 띄지 않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5.1.6.5 건물 입면

- ★ 가 본 가이드라인 4.2.6의 규정을 따른다.
- 나 차고지와 업무 공간의 통합된 외관 디자인을 권장한다.
- 다 지나치게 직설적인 입면 계획은 지양한다.



그림 29. 직설적인 입면 디자인

#### 5.1.6.6 기타 건물 부속물

- ★ 가 본 가이드라인 4.2.7의 규정을 따른다. 단, 현판은 소방 표지 규정 소방방재청 훈령에 따른다.
- 나 소방탑은 건물과 일체화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5.1.7 디자인 가이드라인: 우체국, 전화국

##### 5.1.7.1 위치 환경

- ★ 규모가 큰 4급국 이상은 본 가이드라인 4.2.1의 규정을 따른다.

##### 5.1.7.2 집합적 건축 경관

- ★ 본 가이드라인 4.2.2의 규정을 따른다.

##### 5.1.7.3 공공공간

- ★ 가 본 가이드라인 4.2.3.2 ‘대지 내 보도 확보’ 4.2.3.4 ‘공개 공지의 통합적 배치와 사용’, 4.2.3.5 ‘공개 공지 내 공공시설물 편입’ 규정을 따른다.
- 나 보행 가로와 연결하는 4급국 이상의 공공공간은 건축물 부설 광장을, 6·7급국은 소공원 계획을 권장한다.

##### 5.1.7.4 대지 단위 외부 공간

- ★ 본 가이드라인의 4.2.4.1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 분리’, 4.2.4.2 ‘보행 가로 연결 전면 공지의 경사도 제한’, 4.2.4.3 ‘옥외주차장 위치 제한’, 4.2.4.4 ‘전면 외부 공간의 주차장화 금지’, 4.2.4.6 ‘대지 내 공지와 조경 면적의 배치’, 4.2.4.7 ‘조경 면적이나 가로변 선형 녹지대 내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규정을 따른다.

##### 5.1.7.5 건물 저층부

- ★ 가 본 가이드라인의 4.2.5.1 ‘건물 진입부의 급격한 단차 지양’, 4.2.5.2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 4.2.5.5 ‘저층부 미관 저해 요소 제한’ 규정을 따른다.
- 나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 동선의 분리 계획을 권장한다.
- ★ 다 저층부 금융 업무 부스의 돌출형 증축을 금지한다.
- 라 업무 차량이 근접하여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를 권장한다.

##### 5.1.7.6 건물 입면

- ★ 본 가이드라인 4.2.6의 규정을 따른다.



그림 30. 건물 전면 주차 차량과 지나친 광고물 설치로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의 예

### 5.1.7.7 기타 건물 부속물

- ★가 본 가이드라인 4.2.7의 규정을 따른다.
- ★나 금융 업무 간판 규정은 <디자인서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5.1.8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광 안내소

- ★가 홍보물과 표시물의 무분별한 외벽 부착을 금지한다.
- 나 시민 편의의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 기능을 권장한다.  
(예: 관광 안내소 + 공중화장실 + 짐 보관소)
- 다 기존 건축물의 일부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라 쉽게 인지 가능하고 건축물과 조화되는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31. 보행 가로와 연접한 광장형 외부 공간의 예

## 5.2 복지 관련 건축물

### 5.2.1 현황 및 문제점

- 노후화에 따른 미관 저하,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이 부재하며 필수적 옥외 공간이 부족하다.

### 5.2.2 기본 방향

- 이용자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배려하는 공공건축의 디자인을 권장한다.
- 보육 시설의 경우 외부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그림 32. 옥외 공간이 부재하는 어린이집의 예

### 5.2.3 디자인 가이드라인: 보육 시설

#### 5.2.3.1 위치 환경

- 신축이나 이전 시 인증 획득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5.2.3.2 집합적 건축 경관

- ★가 본 가이드라인 4.2.2의 규정을 따른다.
- 나 대지가 협소한 경우 보행로 확보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따른 건축선 비정렬은 허용한다.

#### 5.2.3.3 공공공간

- 저층부에 외부 공간을 확보하여 건축물 부속 공간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5.2.3.4 대지 단위 외부 공간

- ★ 가 본 가이드라인 4.2.4의 규정을 따른다.
- ★ 나 어린이 수송 차량에서부터 건물 입구까지의 안전한 보행 구역을 확보한다.
- 다 소규모 건물이라도 저층부에 옥외 놀이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라 아동 관련 시설이 대로와 연결한 경우 옥외 놀이공간의 대로변 연결 배치는 지양한다.

#### 5.2.3.5 건물 저층부

- ★ 가 본 가이드라인 4.2.5.1 ‘건물 진입부의 급격한 단차 지양’, 4.2.5.2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 규정을 따른다.
- ★ 나 램프와 경사로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확보한다.
- ★ 다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가 되지 않는 반지하 교실 사용을 금지한다.
- ★ 라 어린이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사실 개구부에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 5.2.3.6 건물 입면

- ★ 가 본 가이드라인 4.2.6의 규정을 따른다.
- 나 저층부 외부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옥상 공원이나 발코니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 다 ‘나.’의 경우 적정 식생과 추락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를 계획한다.
- 라 보육실, 유희실 등의 옥외 공간 연결 배치를 권장한다.

#### 5.2.3.7 기타 건물 부속물

- ★ 가 본 가이드라인 4.2.7.1 ‘기계 설비 노출 금지’, 4.2.7.2 ‘건축물과 부속물의 통합 디자인’, 4.2.7.3 ‘국기 게양대 설치 규정 완화’ 규정을 따른다.
- 나 담장이나 펜스 설치를 허용한다.
- 다 친환경 소재의 어린이 안전 보호 시설물 확보를 권장한다.

### 5.2.4 디자인 가이드라인: 노인 복지 시설

#### 5.2.4.1 위치 환경

- 노인들의 소외감을 감소시키도록 신축이나 이전 시 복합 시설과 함께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33.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저층부 외부 공간 확보 예

#### 5.2.4.2 집합적 건축 경관

- ★ 가 본 가이드라인 4.2.2의 규정을 따른다.
- 나 대지가 협소한 경우 보행로 확보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따른 건축선 비정렬은 허용한다.

#### 5.2.4.3 공공공간

- 저층부에 외부 공간을 확보하여 건축물 부속 공간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5.2.4.4 대지 단위 외부 공간

- ★ 가 본 가이드라인 4.2.4의 규정을 따른다.
- 나 외부 공간에 사용자가 직접 가꿀 수 있는 화단이나 정원, 휴게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5.2.4.5 건물 저층부

- ★ 가 본 가이드라인 4.2.5.1 ‘건물 진입부의 급격한 단차 지양’, 4.2.5.2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 규정을 따른다.
- ★ 나 램프와 경사로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확보한다.
- ★ 다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가 되지 않는 반지하의 거실 사용을 금지한다.
- 라 저층부에 친밀한 교분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의 확보를 권장한다.
- 마 지나친 수직 이동 동선 계획을 지양한다.

#### 5.2.4.6 건물 입면

- ★ 가 본 가이드라인 4.2.6의 규정을 따른다.
- 나 저층부 외부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옥상 공원이나 발코니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 다 ‘나.’의 경우 적정 식생과 추락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를 계획한다.

#### 5.2.4.7 기타 건물 부속물

- ★ 가 본 가이드라인 4.2.7.1 ‘기계 설비 노출 금지’, 4.2.7.2 ‘건축물과 부속물의 통합 디자인’, 4.2.7.3 ‘국기 게양대 설치 규정 완화’ 규정을 따른다.
- 나 담장과 펜스는 지양한다.
- ★ 다 건물내 단차 최소화, 미끄럼 방지, 화장실 내 비상벨 등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안전 장치를 확보한다.
- 라 광택이 강한 내부 마감재의 사용은 지양한다.

## 5.2.5 디자인 가이드라인:

여성 복지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 5.2.5.1 위치 환경

- 전시관이나 소규모 공연 시설 등과 함께 복합 건축 시설로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소외감을 감소시키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5.2.5.2 집합적 건축 경관

- ★ 가 본 가이드라인 4.2.2의 규정을 따른다.
- 나 대지가 협소한 경우 보행로 확보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따른 건축선 비정렬은 허용한다.
- 다 건축물의 진입부와 인접 도로 간 단차 발생은 지양한다.

### 5.2.5.3 공공공간

- 가 시설의 기능적 요소만 강조된 공간 계획은 지양한다.
- 나 저층부에 외부 공간을 확보하여 건축물 부속 공간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 다 이용자에게 위험성을 줄 수 있는 사각지대 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 5.2.5.4 대지 단위 외부 공간

- ★ 가 본 가이드라인 4.2.4의 규정을 따른다.
- 나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자유로운 배치를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의 확보를 권장한다.
- 다 창의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 5.2.5.5 건물 저층부

- ★ 가 본 가이드라인 4.2.5.1 ‘건물 진입부의 급격한 단차 지양’, 4.2.5.2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 규정을 따른다.
- ★ 나 램프와 경사로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확보한다.
- ★ 다 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진입부로 계획한다.
- 라 장애인 복지 시설에는 일반인과의 자유로운 교제가 가능하고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커뮤니티 활동 공간의 계획을 권장한다.
- 마 여성 복지 시설에는 동반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공간 확보를 권장한다.

### 5.2.5.6 건물 입면

- ★ 가 본 가이드라인 4.2.6의 규정을 따른다.



그림 34. 청소년 수련 시설 외부 공간의 예



그림 35. 청소년 수련 시설 외부 공간의 예



그림 36. 여성 복지 시설 중정형 외부 공간의 예

- 나 보호 시설의 경우 채광을 확보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외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다 획일적인 실내 공간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일률적 외관 및 창호 계획은 지양한다.

#### 5.2.5.7 기타 건물 부속물

- ★ 가 본 가이드라인 4.2.7.1 ‘기계 설비 노출 금지’, 4.2.7.2 ‘건축물과 부속물의 통합 디자인’, 4.2.7.3 ‘국기 게양대 설치 규정 완화’ 규정을 따른다.
- 나 담장과 펜스는 지양한다.
- ★ 다 건물 내 단차 최소화, 미끄럼 방지, 화장실 내 비상벨 등 안전 장치를 확보한다.

### 5.3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 5.3.1 현황 및 문제점

- 학교는 긴 교사 건물과 운동장의 전형적 배치에 의하여 획일적 경관을 조성한다.
- 방음벽, 옹벽, 담장 등은 지역 주민의 보행권을 침해한다.
- 학교 후면의 부속동 방치는 도시 경관을 훼손한다.
- 학교 부지 내에 주민 체육 시설 등의 무분별한 신축은 돌출 경관으로 도시 경관을 훼손한다.

#### 5.3.2 기본 방향

- 가로 연결부에 발생하는 옹벽과 방음벽은 최소화하며 방음림이나 건물 부속동으로 학교 경계 형성을 권장한다.
- 기존의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나 친근한 교육 환경을 위한 창의적 디자인을 유도한다.
- 학교의 지역 공동 시설로의 역할 확장을 권장한다.
- 친환경 건물로 설계하는 경우 학생들의 체험 교육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5.3.3 디자인 가이드라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5.3.3.1 위치 환경

- ★ 본 가이드라인 4.2.1.4 ‘옹벽 제한’ 규정을 따른다.



그림 37. 창의적 설계를 통한 다양한 경관형성

### 5.3.3.2 집합적 건축 경관

- ★ 가 부속동은 주변과 건축선을 정렬시킨다.
- 나 지역 체육센터나 부속 건물을 대지 내에 신축하는 경우, 기존 교사와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계획을 권장한다.
- 다 긴 교사 건물형태를 지양하고 교사의 창의적 설계를 통해 다양한 경관형성을 권장한다.



그림 38. 부속 건물로 학교 경계부를 형성한 예

### 5.3.3.3 공공공간

- ★ 가 본 가이드라인 4.2.3.2 ‘대지 내 보도 확보’, 4.2.3.3 ‘무분별한 방음벽 설치 지양’ 규정을 따른다.
- 나 학교 대지와 보행 가로의 경계부는 담장 대신 학교 숲이나 완충 녹지 등의 개방형 디자인 또는 부속동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다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 라 학교 폭력 등의 우범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각적으로 개방된 외부 공간을 계획한다.



그림 39. 중정형 학교 외부 공간의 예

### 5.3.3.4 대지 단위 외부 공간

- ★ 가 통학 보행 동선과 차량 진·출입 동선을 분리한다.
- ★ 나 교문을 통한 차량 진·출입을 금지한다. 단, 비상 차량은 예외로 한다.
- ★ 다 학교 대지 내 주민 이용 복합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주민 이용 동선은 통학 동선과 분리한다.
- 라 교사와 운동장 사이의 급격한 높이 차이는 지양한다.
- 마 학교와 가로의 경계부 옹벽, 담장, 펜스는 지양하며 부속동을 이용한 경계부 디자인을 권장한다.
- ★ 바 본 가이드라인 4.2.4.7 ‘조경 면적이나 가로변 선형 녹지대 내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규정을 따른다.



그림 40. 운동장과 교사의 급격한 높이 차

### 5.3.3.5 건물 저층부

- ★ 본 가이드라인 4.2.5.2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 규정을 따른다.

### 5.3.3.6 건물 입면

- ★ 가 입면을 다양화한다.
- ★ 나 본 가이드라인 4.2.6.2 ‘재질과 색채’ 규정을 따른다.
- 다 교사는 졸업생들의 정신적 유산이 되는 건물이므로, 건물 수명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권장한다.
- 라 교실 내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설계를 권장한다.



그림 41. 교사와 부속동의 통일성 있는 입면

- 마 교사와 부속동의 입면을 통일감 있게 형성한다.

### 5.3.3.7 기타 건물 부속물

- ★ 가 본 가이드라인 4.2.7.1 ‘기계 설비 노출 금지’, 4.2.7.6 ‘담장과 펜스’ 규정을 따른다.
- ★ 나 운동장 본부석의 캐노피는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이지 않도록 계획하며, 교사동 입면과 조화되도록 한다.
- 다 운동장 관람석에 차양 설치를 권장한다.
- 라 부속 시설의 가설 건물 증축은 지양한다.
- 마 친환경 설계에 따른 에너지 절감 등을 학생들의 체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권장한다.

### 5.3.4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도서관

#### 5.3.4.1 위치 환경

- ★ 가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은 본 가이드라인 4.2.1의 규정을 따른다.
- 나 다양한 계층을 반영한 특성화된 도서관 계획을 권장한다.
- ★ 다 장래 확장 등을 고려한 건물 계획을 한다.

#### 5.3.4.2 집합적 건축 경관

- ★ 본 가이드라인 4.2.2의 규정을 따른다.

#### 5.3.4.3 공공공간

- 가 지역 근린 공원과 연계된 계획을 권장한다.
- 나 보행 가로와 연결하는 대규모 도서관의 공공공간은 건축물 부설 광장을, 중·소규모 도서관은 소공원 계획을 권장한다.

#### 5.3.4.4 대지 단위 외부 공간

- ★ 본 가이드라인의 4.2.4.1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 분리’, 4.2.4.2 ‘보행 가로 연결 전면 공지의 경사도 제한’, 4.2.4.3 ‘옥외주차장 위치 제한’, 4.2.4.4 ‘전면 외부 공간의 주차장화 금지’, 4.2.4.6 ‘대지 내 공지와 조경 면적의 배치’, 4.2.4.7 ‘조경 면적이나 가로변 선형 녹지대 내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규정을 따른다.

#### 5.3.4.5 건물 저층부

- ★ 본 가이드라인 4.2.5.1 ‘건물 진입부의 급격한 단차 지양’, 4.2.5.2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 규정을 따른다.

#### 5.3.4.6 건물 입면

- ★ 본 가이드라인 4.2.6의 규정을 따른다.



그림 42. 주변 보행 가로와 연계하여 외부 공간을 조성한 예

#### 5.3.4.7 기타 건물 부속물

- ★가 본 가이드라인 4.2.7.1 ‘기계 설비 노출 금지’, 4.2.7.2 ‘건축물과 부속물의 통합 디자인’, 4.2.7.3 ‘국기 게양대 설치 규정 완화’ 규정을 따른다.
- 나 담장과 펜스는 지양한다.

### 5.4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 5.4.1 현황 및 문제점

- 관리자 위주의 설계로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준다.
- 문화 시설과 공연 특성에 맞는 창의적 디자인이 부재하다.
- 보행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이 부재하다.
- 대규모 문화 집회 시설의 경우 가로 연결부의 폐쇄적 디자인으로 가로를 비활성화한다.



그림 43. 주변 환경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 디자인의 예

#### 5.4.2 기본 방향

- 건축물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디자인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가로 연결부의 개방적 디자인으로 가로를 활성화한다.

#### 5.4.3 디자인 가이드라인:

예술회관, 구민회관, 미술관,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 5.4.3.1 위치 환경

- ★가 본 가이드라인 4.2.1의 규정을 따른다.
- 나 주변 환경을 배려하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권장한다.

##### 5.4.3.2 집합적 건축 경관

- ★ 본 가이드라인 4.2.2의 규정을 따른다.

##### 5.4.3.3 공공공간

- ★가 본 가이드라인 4.2.3.1 ‘대지 관통 보행로 또는 건물 관통 실내형 공개 공간 확보’, 4.2.3.2 ‘대지 내 보도 확보’, 4.2.3.4 ‘공개 공지의 통합적 배치와 사용’, 4.2.3.5 ‘공개 공지 내 공공시설물 편입’ 규정을 따른다.



그림 44. 예술회관 외부 공간의 예

- 나 보행 가로와 연결한 공공공간은 소공원, 근린 광장, 경관 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으로 설계하여 시민 휴게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정형 외부 공간도 허용하되 24시간 개방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5.4.3.4 대지 단위 외부 공간

- ★ 본 가이드라인 4.2.4.1.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 분리’, 4.2.4.2 ‘보행 가로 연결 전면 공지의 경사도 제한’, 4.2.4.3 ‘옥외주차장 위치 제한’, 4.2.4.6 ‘대지 내 공지와 조경 면적의 배치’, 4.2.4.7 ‘조경 면적이거나 가로변 선형 녹지대 내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규정을 따른다.

#### 5.4.3.5 건물 저층부

- ★ 가 본 가이드라인 4.2.5의 규정을 따른다.
- 나 가로의 성격에 따라 상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단, 상업 시설의 간판은 <디자인서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 다 동선을 알리는 노면 표지를 권장한다.

#### 5.4.3.6 건물 입면

- ★ 가 본 가이드라인 4.2.6의 규정을 따른다.
- ★ 나 부지의 사방에서 출입하는 빈도가 높으므로 건물의 측·후면이 보행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 다 전시, 콘서트, 연극, 영화 등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창의적 디자인을 권장한다.

#### 5.4.3.7 기타 건물 부속물

- ★ 가 본 가이드라인 4.2.7의 규정을 따른다.
- 나 공연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설치는 지양한다.
- 다 게시판 등 홍보 시설이 필요한 경우 건물 입면과 통합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단, 이 경우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는다.



그림 45.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디자인의 예

## 5.5 환경 및 위생 관련 건축물

### 5.5.1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원 회수 시설

- ★ 가 소각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계측 후 계획한다.
- 나 혐오 시설 이미지를 벗는 친근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 다 쓰레기 처리 작업 동선이 효율적이고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 라 각 처리 공정마다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 마 관리 시설물은 외부에서 진입이 용이하되 내부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 바 시설물 간 유사성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에 부합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사 소각 시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야간 조명, 색채 계획을 권장한다.
- ★ 아 악취, 먼지, 비산, 배기가스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자 환경 영향 요인을 저감하기 위한 녹지 확보나 경계림 조성을 권장한다.
- 차 도심과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 주변의 자연 경관과 조화되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카 시민 교육을 위한 체험 견학 프로그램 개발, 주민 편의 시설과의 복합화를 권장한다.
- ★ 타 쓰레기 적치나 분류 작업 등이 주 보행 가로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 파 담장 설치를 허용하되 보행 가로와 연관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5.5.2 디자인 가이드라인: 재활용센터

- ★ 가 소비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
- 나 가설 건물은 지양한다.
- ★ 다 재활용물 선별장과 하역이 보행 가로에서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라 대지 내 조경 계획을 권장한다.
- 마 담장 설치를 허용하되 보행 가로와 연관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바 입간판 과다 설치 지양한다.

### 5.5.3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중화장실

- ★ 가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 나 가설 건물은 지양한다.
- ★ 다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 라 주변과 조화되는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마 인지가 쉬운 픽토그램의 효과적인 활용을 권장한다.



그림 46. 경관을 해치는 재활용센터의 예



그림 47. 공중화장실 안내 픽토그램의 사용 예

- 바 기타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 5.6 의료 관련 건축물

### 5.6.1 현황 및 문제점

- 보건소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미관 훼손, 지역 사회 중심의 보건 서비스 강화에 따른 적절한 공간 구성 미흡의 문제를 노출한다.
- 병원의 경우 여러 병동의 진입 차량으로 보행의 연속성이 훼손된다.
- 공립병원 간 연계, 지역 보건소와의 연계가 부족하다.

### 5.6.2 기본 방향

- 병원의 경우 보행 가로 연결부 진입 부분이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보건소의 경우 미관 저해 요소를 제한한다.
- 사업 기획 시 공립병원 간, 보건소 간의 연계 사용 방안을 계획한다.

### 5.6.3 디자인 가이드라인: 병원, 보건소

#### 5.6.3.1 위치 환경

- ★ 가 대규모 병원은 본 가이드라인의 4.2.1.1 ‘시각 통로 확보’, 4.2.1.2 ‘접근성 보장’ 규정을 따른다.
- ★ 나 본 가이드라인의 4.2.1.4 ‘옹벽 제한’ 규정을 따른다.

#### 5.6.3.2 집합적 건축 경관

- ★ 도심에 위치한 병원과 보건소는 본 가이드라인 4.2.2.1 ‘건축선 정렬’, 4.2.2.3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규정을 따른다.

#### 5.6.3.3 공공공간

- ★ 가 본 가이드라인 4.2.3.2 ‘대지 내 보도 확보’ 규정을 따른다.
- 나 병원의 성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공공공간과 건물 이용자 위주의 공공공간을 구별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다 보건소의 전면 외부 공간에는 소공원이나 건축물 부설 광장 설치를 권장한다.

#### 5.6.3.4 대지 단위 외부 공간

- ★ 가 병원은 본 가이드라인 4.2.4.2 ‘보행 가로 연결 전면 공지의 경사도 제한’ 규정을 따른다.



그림 48. 접근이 어려운 보건소 주 진입구의 예



그림 49. 주차장과 분리되지 않아 보행권이 위협받는 부 진입구의 예



그림 50. 차량 진·출입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여 보행 가로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는 병원의 예

- ★ 나 보건소는 본 가이드라인 4.2.4의 규정을 따른다.
- ★ 다 외부 공간에도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 라 병원 대지 진입 차량이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5.6.3.5 건물 저층부

- ★ 가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 나 병원의 외래부는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가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가로 상황과 연관하여 계획한다.
- ★ 다 환자의 승하차를 위한 입구 정차로는 대지 내부에 배치하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외래부와 직접 연결한다.
- ★ 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 시설의 저층부 배치를 권장한다.
- 마 유아 동반 방문자를 배려한 시설 확보를 권장한다.

#### 5.6.3.6 건물 입면

- ★ 가 본 가이드라인 4.2.6의 규정을 따른다.
- 나 병원의 병동부는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5.6.3.7 기타 건물 부속물

- ★ 가 본 가이드라인 4.2.7의 규정을 따른다.
- 나 바닥 등을 활용한 안내 표지 통합을 권장한다.

### 5.7 기타 건축물

#### 5.7.1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공동 주택은 획일화된 입면으로 경관을 훼손한다.
- 새로이 계획되는 공동 주택단지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채, 과장된 옥탑부 디자인, 강렬한 야간 경관 조명 등으로 시각적 공해를 유발한다.
- 밀도와 높이로 폐쇄적 경관을 조성하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경계부 응벽으로 기존 지역 주민의 보행권을 침해한다.

#### 5.7.2 기본 방향

- 대규모 단지와 주변 간의 단절, 경관 사유화 등 집단 이기주의는 지양하고, 단지 인근 지역 사회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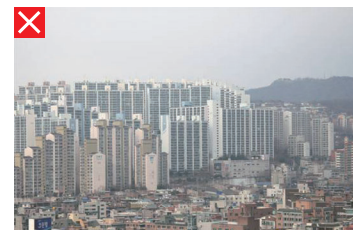


그림 51. 경관을 해치는 공동 주택의 예

- 5.7.3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 주택  
적용 대상은 SH공사 등 서울특별시 출자 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동 주택이다.
- 5.7.3.1 위치 환경
- ★가 본 가이드라인 4.2.1의 규정을 따른다.
  - 나 신규 사업 계획 시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대지 규모나 단지 규모를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 다 신규 사업 계획 시 1개소 이상의 시각 통로, 바람길 등을 확보하며, 이를 위하여 법적 허용 기준보다 낮은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을 권장한다.
- 5.7.3.2 집합적 건축 경관
- 도로와 면하여 근린 상업 시설이 배치되는 경우 건축선 정렬을 권장한다.
- 5.7.3.3 공공공간
- ★가 본 가이드라인 4.2.3.1 ‘대지 관통 보행로 또는 건물 관통 실내형 공개 공간 확보’, 4.2.3.2 ‘대지 내 보도 확보’ 규정을 따른다.
  - 나 지상층의 옥내 주차장화로 발생하는 옹벽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옹벽은 공공시설물 설치 장소 등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다 재개발 시 기존 보행 가로와 연계되는 대지 내 보행로를 하나 이상 확보한다.
  - 라 도심 내 도로 경계부의 방음벽을 대신하여 도로와의 거리 확보나 방음림 조성을 권장한다.
- 5.7.3.4 대지 단위 외부 공간
- 가 단지 내 옥외주차장은 최소화하고 커뮤니티 활동 위주의 외부 공간 계획을 권장한다.
  - 나 1층 필로티는 대지 레벨과 일치시켜 단지 공용 공간으로의 활용을 권장한다.
- 5.7.3.5 건물 저층부
- 가 1층에는 세대보다는 필로티나 단지 공용 부대 복리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나 선칸이나 1층과 연계한 복층형, 고층형 계획 등으로 지하층 활용도를 높일 것을 권장한다.
  - 다 1층에 세대를 두는 경우 대지 단차나 식재, 조경 설치 등의 완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 라 다양한 주동 진입구 디자인을 권장한다.

### 5.7.3.6 건물 입면

- 가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입면 디자인과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채 사용은 지양한다.
- 나 과장된 상부 지붕 디자인을 지양한다. 옥상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경우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 다 복층형, 스킵형 등 다양한 세대 계획에 의한 입면 디자인을 권장하며, 표면 장식에 의존하는 입면 디자인을 지양한다.
- 라 돌출형, 개방형 발코니 등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권장한다.
- 마 측면의 창호 계획을 권장한다.

### 5.7.3.7 기타 건물 부속물

- 가 실외기와 무동력 팬 등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시 차폐 장치 계획을 권장한다.
- 나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 수거는 부속동이나 건물에 통합하도록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다 공동 주택 브랜드명이나 상표는 건물의 측면이 아닌 단지 출입구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라 공동 주택의 지나친 야간 경관 조명은 지양한다.
- ★ 마 공동 주택 측면의 발광형 브랜드명 설치를 금지한다.

### 5.7.4 디자인 가이드라인: 복합 건축물

본 항목은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새로이 두는 공공건축물의 증축, 개축, 신축 등 사업 계획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다.

#### 5.7.4.1 프로그램 계획 시 기본 원칙

- 가 주변에 유사 기능의 공공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업에 중복 기능을 포함시키기보다는 기존 건축물과 연계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 나 너무 많은 기능을 담기보다는 주민 설문을 이용하여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한다.
- ★ 다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배치를 우선으로 한다. (예: 동 주민센터 + 운동 시설)
- 라 서로 다른 기능의 배치 시 프로그램의 상호 연관으로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을 권장한다.  
(예: 경로당 + 어린이집 + 보건소, 학교 + 지역 운동 시설)

#### 5.7.4.2 규모 산정 시 기본 원칙

- ★ 가 순면적 대비 충분한 공용 면적 비율을 확보한다.
- ★ 나 지하 주차장이나 후면 주차장 배치가 가능하도록 면적을 확보한다.
- ★ 다 전면 공지 활용 용도에 따른 면적을 확보한다.

#### 5.7.4.3 공공건축물 이전 후 기존 부지 활용

- 복합 건축물로 이전 시 기존 공공건축물의 부지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공간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예: 근린 공원, 어린이 공원, 단독주택지 내 공용 주차장 등)

## 첨부: 서울시 공공건축물 현황 분석

### ▶ 서울시 공공건축물 현황

첨부 [표-1] 서울시 공공건축물 현황

서울시 공공건축물 총 개소 대비 용도 분포 현황	서울시 공공건축물 총 면적 대비 용도 분포 현황	사용 연한 20년 이상 된 서울시 공공건축물 용도 분포 현황
1. 근린 생활 시설 (33%)	1.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26.72%)	1. 근린 생활 시설 (42%)
2.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17%)	2. 업무 시설 (20.41%)	2. 주거 시설 (20%)
3. 노유자 시설 (13%)	3. 근린 생활 시설 (18.04%)	3. 노유자 시설 (11%)
4. 주거 시설 (11%)	4. 문화 및 집회 시설 (6.02%)	4.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9%)
5. 공공용 시설 (7%)	5. 교정 및 군사 시설 (5.41%)	5. 공공용 시설 (8%)
6. 교정 및 군사 시설 (7%)	6. 공공용 시설 (5.32%)	6. 업무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3%)
7. 업무 시설 (4%)	7. 자동차 관련 시설 (5.28%)	7. 문화 및 집회 시설 / 창고 시설 (1%)
8. 자동차 관련 시설 (2%)	8. 노유자 시설 (3.93%)	이하 0%
9. 문화 및 집회 시설 (1%)	9. 운동 시설 (3.24%)	
10. 창고 시설 (1%)	10. 주거 시설 (2.52%)	

### ▶ 서울시 공공건축물 총 개소 대비 용도 분포 현황

소규모 근린 단위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를 위한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1. 근린 생활 시설 (33%):  
동사무소 > 파출소 > 청사
2.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17%):  
초등학교 > 대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3. 노유자 시설 (13%):  
경로당 > 어린이집
4. 주거 시설 (11%)

---

▶ **서울시 공공건축물 총 면적 대비 용도 분포 현황**

소규모 근린 단위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를 위한 중규모 이상의 건축물, 대규모 근린 단위로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를 위한 건축물의 비중이 높다.

1.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26.72%):  
초등학교 > 대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2. 업무 시설 (20.41%):  
구청사 > 검찰청 > 우체국
3. 근린 생활 시설 (18.04%):  
경찰청 > 우체국
4. 문화 및 집회 시설 (6.02%):  
박물관 > 회관 > 센터

---

▶ **사용 연한 20년 이상 된 서울시 공공건축물 용도 분포 현황**

- 사용 연한이 20년 이상 되어 향후 15년 이내에 레노베이션이나 신축이 예상되는 공공건축물들로 최근 신축 공공건축물의 용도 변화 추이 현황을 살펴 볼 때 복합 시설로의 이전이 예측된다. 이 경우 빈 부지의 활용에 대한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
- 사용연한이 50년 이상된 건축물은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 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공공건축물은 종로구와 중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1. 근린 생활 시설 (42%)
2. 주거 시설 (20%)
3. 노유자 시설 (11%)
4.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9%)

